

오키나와 국제 교류 인재개발 재단 (OIHF)
다문화 공생 추진 사업 외국인 의료 통역 지원 실시 지침

1 목적

거주 외국인과의 공생사회를 지향한 환경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찰 받을 때의 커뮤니케이션에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주 외국인을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등록 및 소개를 실시함으로써 거주 외국인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만들기에 기여한다.

2 의료 통역사 활동 내용

(1) 의료 통역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A. 병원/병원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의료 통역 업무
- B. 외국인 건강을 위한 통역
- C. 기타 OIHF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역 업무

(2) 심각한 건강 상태, 중요한 통지의 해석, 전염병과 관련된 수술 및 감염증에 관한 통역 서비스와 같은 주요 책임이 관련된 사례는 활동 대상으로 제외한다.

(3) 우리는 정치, 종교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한 요청은 받지 않는다.

(4) 개인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OIHF 전무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을 받을수 있다

3 의료 통역 서비스 언어

통역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 등으로 한다. 또한 기타 언어는 통역 할 수있는 통역사가 있는 경우에 소개 할 수 있다.

4 의료 통역사 자격 및 등록

(1) 자격 및 등록 방법

원칙으로서 재단이 실시하는 '의료 통역사 양성 강좌'를 수강해 인정 테스트에 합격한 분에게 등록 자격을 주어 등록 희망자는 '의료 통역사 등록 용지(제 1 호 양식)'를 재단 국제 교류과에 제출해 주세요. 의료 통역사 등록이 인정된 분에게 ID 카드를 부여한다.

(2)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원칙으로서 2년 후의 연도말까지로 한다. 2020년도 이전의 등록자가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기간 중에 재단에서 실시하는 '의료 통역사 스텝업 강좌'를 수강하여 인정 테스트에 합격을 필수로 한다.

2021년도 이후의 등록자가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기간 중에 실시하는 '의료 통역사 스텝업 강좌' 수강 또는 의료통역사로서의 활동 실적으로 갱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3) 등록 해제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삭제된다.

- A. 등록 된 사람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
- B. 연락이 끊어졌을 때
- C. 등록 기간이 만료됐을 때
- D.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의료 통역사 훈련 강좌 / 스텝업 강좌

(1) 의료 통역사 양성 강좌

A. 목적

통역에 필요한 마음가짐, 의료제도, 병원구조, 의료에 관한 기초지식 및 의료현장 등에서 필요한 통역 스킬을 습득시켜 의료 현장에서 통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B. 수강 대상자

- a. 20 세 이상이고 의료통역에 관심이 있으며 일본어 및 그 이외의 언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 b. 원칙적으로 모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분

C. 양성 강좌는 필요에 따라 개강하며 강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 스텝업 강좌

A. 목적

의료제도, 병원의 구조, 의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의료 현장 등에서 필요한 기술을 단계 향상시키고 의료현장의 통역기술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B. 수강 대상자

- a. OIHF 의 의료통역사 수료자 및 의료통역에 관심이 있으며 일본어 및 기타 언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
- b. 원칙적으로 모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분

C. 스텝업 강좌는 필요에 따라 개강하며 강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6. 의료 통역을 보낼 수있는 지역

의료 통역사 파견 범위는 오키나와현 본섬 내로 한다.

7. 의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분

- (1) 병원 또는 진료소
- (2) 건강 관련 단체
- (3) 학교 보건소
- (4) OIHF 전무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조직 또는 개인

8. 요청 절차

의료 통역을 보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통역 희망일의 5 일전(토일요일 공휴일은 카운트하지 않는다)까지 '의료 통역사 등록자

- (1) 사례금은 1 시간당 2,000 엔으로, 도시활동시간은 최대 3 시간까지로 한다. 또한 지급액은 소정의 세금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2) 활동 시간이 1 시간 미만일 경우 1 시간으로 하고 1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 분 단위로 마감하며, 모두 잘라 버린다.
- (3) 사례금의 액수는 통역사가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와 의뢰인이 제출하는 '활동확인서'를 모두 대조하여 활동시간에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 재단이 양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1 교통비에 대하여

통역사의 교통비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교통비에 관해서는 대중교통기관의 왕복요금 지급을 권장하나 의뢰기관 등의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고 싶은 경우 통역사와 협의한 후라면 그 한이 아니다.

- (1) 대중 교통(버스 /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지 사이에 계산 된 버스 / 모노레일 요금을 지불한다.
- (2) 자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모노레일역 등에서 의뢰처까지의 대중교통 운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요금 등이 발생한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영수증 제출을 통해 실비를 지급한다.
- (3) 택시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의뢰처의 양해를 구하고 영수증 확인 후 실비를 지급한다.

12 사례금 및 교통비의 지불 방법

사례금과 교통비의 금액이 확정된 후 의뢰자는 통역사에게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송금에 관한 수수료는 의뢰자 부담으로 한다.

13 의료 통역사의 보험

보험에 가입하고 통역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종합보장을 이용할 수 있다.

14 의뢰자의 책임

- (1) 의뢰자가 의료기관이나 시읍면 등의 단체인 경우,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통역사 사이를 주선하고, 필요한 확인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할 것.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 재단이나 통역자에게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 (2) 의뢰자는 통역장소와 일시를 명확히 결정한 후 재단에 신청한다. 또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 1 명에 대해 원칙으로 통역사 1 명이 대응하는 것으로 하여 활동 당일에 복수의 외국인을 대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단,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신청단계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이 아니다.

- (3) 통역 서비스는 최대 3 시간으로 제한된다.
- (4) 소개의뢰서에서 신청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활동 당일 통역사에게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후 통역사를 소개하지 않는다.
- (5) OIHF 를 통하지 않고 의료 통역사에게 직접 의뢰는 금지. (OIHF 는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다.)
- (6) 통역사 소개 후 의뢰를 취소하려면 다음의 취소수수료를 통역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A 취소가 통역사 소개 직후부터 의뢰일 전날 사이에 관해서는 사례금 1 시간당 금액
B 취소가 의뢰일 당일 또는 무단 취소인 경우 구속 예정 시간만큼의 사례금 및 왕복분의 교통비
- (7) 의뢰자는 사고나 약속사의 불이행 등에 의해 통역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또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단 국제교류과에 보고하여 성의껏 해결을 본다.
- (8) 통역사의 개인 정보는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9) 통역 활동 중에 통역자가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는 소개 의뢰 기관의 책임 하에 치료를 실시할 것.
- (10) **'활동 확인서 (제 4 호 양식)'의 대폭적인 지체 제출이나 미제출, 또 통역자에 대한 사례금이나 교통비 등의 미불이 있었을 경우 이후 본 서비스의 이용을 불가로 한다.**

15 의료 통역사의 책임

- (1) 의사·간호사·의료기관 스태프 등이 말하는 내용을 충실히 통역하고 주관적인 견해는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 (2) OIHF 를 거치지 않고 통역을 맡아서는 안 된다.(OIHF 는 책임지지 않는다)
- (3) 통역 현장 구속 시간은 최장 3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3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소개 의뢰 기관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재단에 연락하여 활동을 종료해도 된다.
- (4) 활동 당일 파견처에서 사전에 의뢰가 있었던 것 이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이 판가름 밝힐 경우 이후 재단의 통역사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5) 통역사는 활동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또한 등록 말소 후에도 동일하게 하다.
- (6) **활동 후 1 주일 이내에 재단에 '활동보고서(제 3 호 양식)'를 제출할 것. 덧붙여 보고서의 대폭적인 지체 제출이나 미제출의 경우, 사례금이나 교통비의 지급 수속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6 중요 사항

통역사가 실시하는 통역에 대해서는 재단 및 통역자는 의료상,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또한,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 사업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가이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